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장소 중 “각 동의 출입구”는 공동주택의 출입구를 의미하나,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부대·복리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는 바, 해당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위치 명확화(안 제9조)

- 1)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설치하는 장소 중 ‘각 동의 출입구’에 대해 공동주택 뿐 아니라 부대시설, 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
- 2)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위치 중 “각 동의 출입구”를 “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”로 명확히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각”을 “공동주택 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) 영 제39조에서 “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 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		제9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) ----- ----- -----.		
1. 승강기, 어린이놀이터 및 <u>각</u> 동의 출입구마다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기(이하 “영상정보처리 기기”라 한다)의 카메라를 설 치할 것		1. ----- <u>공</u> <u>동주택 각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	
2. ~ 4. (생략)		2. ~ 4. (현행과 같음)		